



노무제공자(특수형태근로종사자) 고용보험 제도

◦적용대상

- ▶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

※ 「고용보험법」 제77조의6

①보험설계사	②방문강사	③택배기사
④대출모집인	⑤신용카드회원모집인	⑥방문판매원
⑦대여제품 방문점검원	⑧가전제품 배송·설치기사	⑨방과후학교강사(초·중·등)
⑩건설기계조종사	⑪화물차주	⑫퀵서비스기사
⑬대리운전기사	⑭소프트웨어 프리랜서	⑮관광통역안내사
⑯어린이통학버스기사	⑰골프장캐디	

◦적용제외

- ▶ 연령제한 : 65세 이후 신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(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노무제공자는 적용 대상)
- ▶ 소득제한 : 월보수액 80만원 미만인 경우
» 월보수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소득, 경비를 제외한 금액



예술인 고용보험 제도

◦적용대상

- ▶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문화 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
- ※ 「고용보험법」 제77조의2

◦적용제외

- ▶ 연령제한 : 65세 이후 신규 계약 체결자
- ▶ 소득제한 : 월평균 소득 50만원 미만인 경우
» 다만, 계약 기간 1개월 미만인 단기예술인은 소득과 상관없이 적용



업무 담당기관 안내

◦노무제공자·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전담센터

- ▶ 주요 업무 : 노무제공자·예술인 가입, 피보험자 자격관리, 보험료 산정 부과

근로복지공단 대표번호 1588-0075



센터명	관할지역	팩스번호
서울특고센터	서울, 강원, 경기 (의정부, 동두천, 양주, 포천, 연천, 남양주, 구리, 가평)	0505-290-3102 0505-175-1203 0505-175-1204
	(예술인) 전국	0505-290-3203
경인특고센터	인천, 경기 (서울특고센터 관할 제외)	0505-134-1102 0505-175-1103
부산특고센터	부산, 경남, 대구, 울산, 경북	0505-132-1102 0505-173-1103
대전특고센터	대전, 충남, 충북, 세종, 광주, 전남, 전북, 제주	0505-139-1102 0505-250-1103

◦유관기관 안내

기관명	주요업무	대표번호 / 홈페이지
고용노동부 고용센터	» 실업급여 지급 » 출산전후급여 지급	1350 / www.ei.go.kr
국민건강 보험공단	» 보험료 고지 및 수납, 체납 관리	1577-1000 / www.nhis.or.kr



홍보간행물 2023-0014

월보수가 **260만원 미만**인 노무제공자,
예술인 이라면 누구나

“보험료의 **80% 지원**
받으세요!”



노무제공자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



고용노동부



근로복지공단

대표전화 1588-0075

I 노무제공자·예술인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

I

◦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란?

- ▶ 소규모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와 노무제공자·예술인의 고용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,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.

◦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?

- ▶ 사업주 및 노무제공자·예술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각 80%를 지원합니다.



◦누가 혜택을 받나요?

- ▶ 월보수 26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·예술인
 - » 단,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보수액 합산금액이 26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
- ▶ 월보수 26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·예술인과 노무제공(문화예술용역)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
 - ※ 노무제공자·예술인의 수는 미포함



◦지원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?

- ▶ **(노무제공자·예술인)** 사업주가 해당월의 고용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까지 완납하면 그 다음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하여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합니다.
- ▶ **(플랫폼 노무제공자)** 플랫폼 사업주가 해당월의 고용보험료를 법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면 지원금을 이용사업주 계좌 및 노무제공자 본인 계좌로 각각 지급합니다.
 - ※ 노무제공자의 경우 월보수액을 기한내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

II 노무제공자·예술인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

II

◦(노무제공자·예술인) 지원신청 방법

- ▶ 온라인 : 고용산재 토털서비스(<https://total.comwel.or.kr>)⇒ 민원접수 ⇒ 특수형태근로종사자(노무제공자)·예술인 ⇒ (예술인·노무제공자)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
- ▶ 서면 : (노무제공자·예술인 사업장용)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 작성 ⇒ 팩스 전송

◦(플랫폼 노무제공자) 지원신청 방법

- ▶ 온라인 : 고용산재 토털서비스(<https://total.comwel.or.kr>)⇒ 민원접수 ⇒ 플랫폼종사자(노무제공자) ⇒ (노무제공 사업·노무제공자)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
 - ※ (플랫폼 노무제공자만 해당) 휴대전화 간편 신청 : https://total.comwel.or.kr/durunuri_platform.do ⇒ 본인인증 ⇒ 본인 계좌 등 입력 후 지원 신청
- ▶ 서면 : 노무제공 플랫폼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 작성 ⇒ 팩스 전송
 - ※ 지원신청서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⇒ 정보공개 ⇒ 자료실 ⇒ 서식자료에서 다운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

◦지원 기간

- ▶ 노무제공자·예술인별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(실제 지원받은 개월 수 기준)

◦지원 제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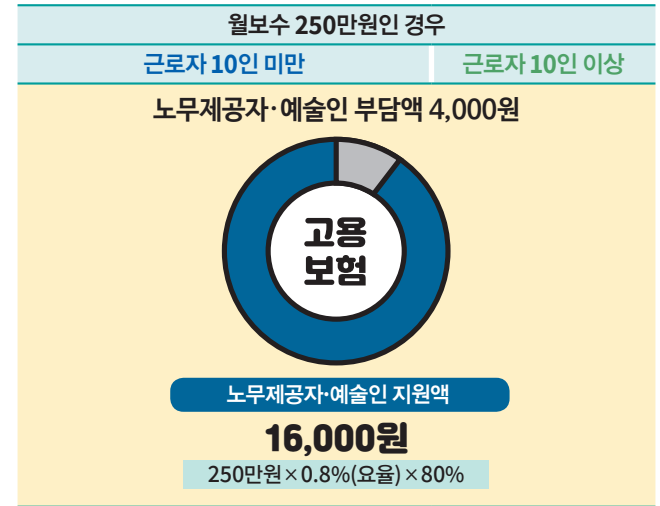
- ▶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이상
- ▶ 전년도 종합소득 연 4,300만원 이상

III 노무제공자·예술인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

III

◦노무제공자·예술인 지원액

- ▶ 월보수 260만원 미만인 모든 노무제공자·예술인 지원



◦사업주 지원액

- ▶ 근로자 10인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대상
 - ※ 노무제공자·예술인의 수는 미포함

